



식품의약품안전처  
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

## 한국콘텐츠진흥원 ·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.)는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분야,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·화장품 분야의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한류의 확산과 해외진출 확대 및 교류활성화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관련 정보 공유, 공동 홍보 마케팅
2. 한류와 연계하여 동반 수출 지원 협력
3. 해외비즈니스센터 연계 해외진출 확대
4.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다고 기관이 합의한 사항

**제3조(해석)**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협약이행)** 이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.

**제5조(효력 및 유효기간)**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.

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한 기관이 상대 기관에 서면형식으로 통보하거나 상호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개정)** 본 협약의 내용은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법적 권리의무)** 본 협약서는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위와 같이 업무상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월 30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김영준

김영준

식품의약품안전처

처장 류영진

류영진